

## 서대문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(다급) 채용시험계획 공고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(다급)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 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.

2025년 1월 31일

서울특별시서대문구인사위원회위원장



### 1.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

채용분야	채용직급	채용인원	근무기간	근무기관	담당직무 내용
청소년 정책 수립 및 시행	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다급	1명	2025.03.01.~ 2026.02.28. (주 35시간)	서대문구청 아동청소년과	- 청소년정책 개발·수립·시행 - 청소년 활동사업 운영·지원 - 청소년 자치참여 활동기구 운영 - 기타 청소년사업 관련 실무 전반

※ 임용예정일 : 2025. 3. 1. (임용예정일은 채용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)

### 2. 채용 근거

- 「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」 (법 른 제20621호, 2024.12.31.)
-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(대통령령 제35192호, 2025.01.07.)
-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(대통령령 제35183호, 2025.01.03.)
- 「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 (행정안전부예규 제314호, 2025.01.07.)
-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사규칙」 (제830호, 2024.07.17.)

### 3. 응시자격 요건

- 공통 응시자격요건** (기준일 :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)
  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에 해당하지 아니하고,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

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 제1항에 의해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응시할 수 없음

- ※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.
1. 피성년후견인
 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  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 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  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 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  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  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
  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  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  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  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※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)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
- ※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)
-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    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    2.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)
  -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(이하 “비위면직자등”이라 한다)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    1. 공공기관(「유아교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·공립학교를 포함한다)
   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    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
    4.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

- 지역·연령·성별 : 18세 이상인 자로 지역, 성별 제한없음 (단,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)

□ **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**

-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5항에 따라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하고,
- 다음 응시자격조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※ 자격기준일 :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

구분	응시자격요건
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(다급)	1.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.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.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※ 직무분야 : 청소년 정책 분야 ※ 우대사항 :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

#### 4. 근무조건 및 보수수준

- 근무조건
  - 근무시간 : 주 5일 35시간(1일 7시간 근무)
  - 근무기간 : 채용일로부터 1년
  - ※ 계약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 5년까지 계약기간 연장(사업계속시)
  - 복무기준 :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및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」 준용
- 보수조건 : 연 42,501천원(2025년 기준)
- 수당 등 연봉외 급여는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및 「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지급
- ※ 단, 시간외 수당, 여비 등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
-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(실업급여)에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  
(단,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)

#### 5.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

##### □ 응시원서 접수

- 접수기간 : 2025. 2. 11.(화) ~ 2. 13.(목)
- 【 접수시간 09:00~18:00, 중식시간 12:00~13:00 제외 】
- 접수방법 :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

- 대리 접수 가능하며, 팩스·인터넷 접수 불가
- 우편접수는 등기만 가능하며, 제출서류와 응시수수료(7천원) 동봉 제출
-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,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시험장에서 배부

○ 접수처 : 서대문구청 아동청소년과 청소년정책팀

(서대문구 연희로 247, 서대문구청 제3별관 2층)

- 응시원서 양식(응시원서, 이력서, 자기소개서 등)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
-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입증지(인증기 인증)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
- 대리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

## □ 시험일정

구 분	일 시	장 소	비 고
( 1 차 ) 서 류 전 형	2025.02.14.(금) 예정	서 대 문 구 청 아 동 청 소 년 과	
▶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	2025.02.17.(월) 예정	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	면접시험일정고
( 2 차 ) 면 접 시 험	2025.02.19.(수) 예정	서 대 문 구 청	
▶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	2025.02.20.(목) 예정	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	

※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,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

## □ 1차 시험(서류전형)

- 당해 직무수행에 관한 응시자의 자격·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서면 심사
- 단,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

## □ 2차 시험(면접시험)

-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 요소를 상·중·하로 평가

※ 평정요소 :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,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,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, 예의·품행 및 성실성, 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

-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
  - ※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,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

## 6. 제출서류

### ① 응시원서(첨부1) 1부

- 응시수수료 : 7,000원\*(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입증지)
  - ※ 응시원서에 수입증지를 부착하여 접수처(아동청소년과 청소년정책팀 양종은 주무관)에 제출
  - ※ 수입증지 인증처 : 서대문구청 1층 민원실 2번 창구(330-1150)
  - ※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거나 「한부모 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 면제 (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사규칙 제8조 제3항)

### ② 이력서(첨부2) 1부

-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
-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국민건강보험공단) 기타 증빙자료 제출

### ③ 자기소개서(첨부3) 1부

### ④ 직무수행계획서(첨부4) 1부

### ⑤ 개인정보 제공 · 이용 동의서(첨부5) 1부

### ⑥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(첨부6) 또는 주민등록초본(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) 1부

### ⑦ 학사학위 이상의 졸업증명서 1부, 학위증서 사본 1부

-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,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
- 사본 제출 가능 (단, 최종합격 시 원본(대조 확인용) 제출 필요)

### ⑧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: 1부 (원본 또는 사본)

- 근무기간, 직위,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(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)

- 비상근,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,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기재
-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 직무내용 기재가 안될 경우 '경력사실 확인증명서(첨부7)' 추가 제출

### ⑨ 자격증 사본 : 1부 (원서 제출 시 원본 지참)

- ※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(학력, 경력증명서 등)의 경우, 한글 번역본(공증필)을 첨부
- ※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나,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
- ※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
## 7. 기타 유의사항

-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.
-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(단, 원본 제출서류의 경우 불합격자가 원할 경우 반환),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,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)에 따라 임용시험에 부정행위를 하거나,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.
- 응시원서에 E-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 
 ※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
-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(없을 경우 포함) 또는 서류전형 결과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가능한 한 1회 이상 재공고 후

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.

-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홈페이지([www.sdm.go.kr](http://www.sdm.go.kr))에 공고합니다.
-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대문구청 이동청소년과 청소년정책팀 담당 양종은 ☎ 02-330-1286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